

 국토교통부		<b>보도해명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9. 17(화) / 총 2매(본문 2매)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윤진환, 서기관 최수관, 사무관 유연형 • ☎ (044) 201-3835, 4996, 3843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국토부는 벤츠 차량 리콜과 관련하여 보주기 행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

- 국토교통부가 벤츠코리아의 ‘더뉴 GLE’ 차량의 리콜사실을 알고서도, 규정에만 매달려 공식자료로 알리지 않는 등 보주기 행정을 하였다는 조선비즈 보도내용(9.16일)은 사실이 아닙니다.
-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GLE 등의 차량(529대)에 대하여 판매전에 결함사실을 발견했다며 리콜계획서를 제출(8.22)함에 따라,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등에 따라 신속히 사실 공개\*와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.
  - \* 결함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결함내용, 시정기간 등 시정조치계획을 소유자 등에 대해 우편통지하고 1개 이상 일간신문 광고
  - 이에 벤츠코리아는 상기 내용을 일간신문(9.5)에 광고\*하였고 리콜에 착수하였습니다.
    - \* 자동차안전연구원 ‘자동차 리콜센터’ 홈페이지에도 게재
    - 다만, 자동차관리법에는 “자동차 소유자”에게 리콜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어, 벤츠코리아는 사전 계약상태에 있는 구매예정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국토부는 ‘구매 예정자’도 제작사로부터 리콜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(자동차관리법령 개정 등)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비즈, 9.16) >

- ◆ (조선비즈) 벤츠코리아, ‘더뉴 GLE’ 리콜결정 해놓고 출시행사 땀 숨겨… 국토부는 알고 있었다
  - 벤츠코리아(주)는 9.3일 신차 출시에 앞서 8월말 국토부에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- 계약한 소비자에게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지 않고 일간지 한곳에 기사가 아닌 광고 형태게재
  - 국토부는 리콜사실을 알고서도 규정에만 매달려 공식자료로 알리지 않는 등 ‘봐주기 행정’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동차정책과 최수관 서기관, 유연형 사무관(☎ 044-201-4996, 38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